

전주지방법원 2024. 1. 31 선고 2023나11807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7. 11 선고 2024다222823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4. 1. 31 선고 2023나11807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23. 2. 9 선고 2022가소150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, 명상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훈태

피고, 항소인 B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가소1507 판결

변론종결 2024.1.17.

판결선고 2024.1.31.

주문

1.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4,385,520원 및 그 중 1,850,000원에 대하여 2022. 4. 1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C에게 2002. 7. 19. 변제기를 2004. 7. 19.로, 이자율을 연 11.5%, 지연배상금률을 연 20%로 하여 4,900,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(이하 '이 사건 대출금'), 피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, C이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C과 피고를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4,9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. 7. 19.부터 2002. 11. 18.까지 연 11.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4가소9200으로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4. 3. 17. 확정된 사실,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22. 4. 11.이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지급한 원금은 1,850,000원, 미지급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2,535,520원,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현재 연 14.5%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,385,520원 및 그 중 1,850,000원에 대하여 2022. 4. 11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병원비 등으로 힘든 형편인 가운데도 이 사건 대출금을 갚고 있으나 스트레스

등으로 힘이 들므로 원금만 변제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나, 채무의 면책 및 탕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이 법원의 권한 외의 부분으로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적법한 항변 사유가 되지 못한다.

2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 사 설 판 사